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671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6. 25.

판 결 선 고 2021. 7. 23.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가단952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을 제6호증)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임차보증금조로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당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진, 판사 황정수, 판사 장성훈